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19.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등 10명(김정희, 이진환, 이선주, 이영빈, 서보영, 임미연, 서민우, 고명욱, 박정환)
- 발의일자: 2023. 7. 7.(금)
- 회부일자: 2023. 7. 7.(금)
- 검토기간: 2023. 7. 7.(금) ~ 7. 13.(목)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제5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평가, 보고서 작성(안 제7조~제9조)
- 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제14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7. 7. ~ 7. 17.)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서는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하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자료·의견 제출 요구나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3항에서는 국가기본전략, 구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을 고려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변화를 잘 반영한 중·장기적인 기본전략 마련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서는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과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 제9조제3항에서는 구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은 서면, 현장,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2년마다 구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서는 구청장은 구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 통보에 대해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에서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 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 요청이나 평가전문기관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필요시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등)부터 제14조(운영세칙)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다양한 분야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2022. 7. 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참 고 사 항】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 1992년 리우선언 이후 각국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권고
- 1999년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 정부 건의
- 2000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국제연합(UN)의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 2006년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 수립
 -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2009년 대통령 직속기구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구
 -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 지위 격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0) 수립
-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 수립
- 2018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1~40) 수립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복원
 - 소관부처 환경부 → 국무조정실 격상

□ 국제연합(UN)

1) 1992년 브라질 “리우선언”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선언”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3)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및 전세계적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 간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공동목표 추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